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91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박홍배 · 이강일 · 민병덕
김남근 · 안호영 · 박희승
김태년 · 이기현 · 박균택
김우영 · 이정현 · 정태호
이용선 · 손명수 · 박홍근
문금주 · 이용우 · 진성준
남인순 · 김문수 · 송재봉
강득구 · 복기왕 · 정준호
강준현 · 정진욱 · 홍기원
김 윤 · 염태영 · 이주희
의원(30인)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의 대다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여 명절, 공직선거일 등 공휴일에도 법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날, 추석, 8월 14일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는 등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협약에 불과하여 일부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물량 쏠림 등이 우려되며 강제력이 없어

배송 경쟁이 재발하는 등 한계가 발생함.

또한 택배 산업의 특성상 특정 업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휴업할 경우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휴무가 불가능함.

이에 국가가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의무휴업일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의무휴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휴업일의 지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5호 신설).

라. 의무휴업일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의무휴업일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날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1. 설날
2. 추석
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4. 그 밖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의무휴업일과 다른 날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일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배송 물량 및 배송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3항에 따른 휴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위탁수수료의 삭감, 배송구역의 조정,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등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의 지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의무휴업일의 지정) ①</u> <u>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u> <u>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u> <u>권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u> <u>의 날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u> <u>및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의무</u> <u>휴업을 명하여야 한다.</u> <u>1. 설날</u> <u>2. 추석</u> <u>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u> <u>른 선거일</u> <u>4. 그 밖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u> <u>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u> <u>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날</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u> <u>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택배서비</u> <u>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u> <u>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u> <u>의무휴업일과 다른 날을 휴업</u> <u>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u>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
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
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무휴업일의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
점은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휴
업일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
무를 보장하고 배송 물량 및
배송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
점은 제3항에 따른 휴무로 인
하여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위
탁수수료의 삭감, 배송구역의
조정,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등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불이익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

-----.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u><신 설></u> <u><신 설></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13. ~ 15. (생 략) ②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u>일의 지정 및 그 이행에 필요 한 조치</u> 6. (현행 제5호와 같음)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1 <u>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 <u>약을 해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택 <u>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u> 14. ~ 16. (현행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